

확정배출량 명세서

제 출 인	① 상호(사업장 명칭)		② 종별	(대기)								
	③ 성명(대표자)		④ 생년월일	(수질)								
	⑤ 주소		(전화번호:)									
⑥ 사업장소재지		(전화번호:)										
1.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												
⑦ 배출구 번호	⑧ 주요배출시설명	⑨ 사용연료명	⑩ 사용연료량(톤, kl/반기)	⑪ 배출계수	⑫ 황 함유량(%)	⑬ 확정배출량 (kg/반기)						
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(톤, kl/반기)				⑮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					
2. 제1호 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												
대 기 오 염 물 질	황 산 화 물	⑯ 자가측정 등에 의한 확정 배출량	⑯-1 배출구 번호	⑯-2 측정 일자	⑯-3 측정농도 (ppm)	⑯-4 일일가스유량 (Sm ³ /일)	⑯-5 일일 배출량 (kg/일)	⑯-6 일일평균 배출량 (kg/일)	⑯-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	⑯-8 조업일수	⑯-9 확정배출량 ⑯-6×⑯-8 또는 ⑯-7×⑯-8	
	⑰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	⑰-1 배출구 번호	⑰-2 측정 일자	⑰-3 측정농도 (ppm)	⑰-4 일일가스유량 (Sm ³ /일)	⑰-5 일일 배출량 (kg/일)	⑱ 확정배출량 합계 (kg/반기)					

②③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조정산정										
구분		검사결과에 따른 산출				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	합 계	평 균	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	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
		월 일	월 일	월 일	월 일					
배출도 (mg/L)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									
	화학적 산소요구량									
	부유물질									
일일폐수유량(m ³)										
일일 배출량 (kg)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									
	화학적 산소요구량									
	부유물질									
②④ 확정배출량산정										
구분		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(kg)				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		확정배출량(kg)		
유기물질										
부유물질										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()년도 ()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
2.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3.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(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)
4.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(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5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(공동방지사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
6.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1)부터 3)까지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※ 작성요령

○ 공통

1.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.

○ 대기오염물질

1. ⑦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2. ⑧란은 ⑦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. 다만,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.
3. ⑨란은 ⑧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(석탄, 유연탄, 무연탄, BC유, BA유 등).
4. ⑩란은 ⑦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(석탄,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, 액체연료는 kℓ 단위로 표시합니다).
5. ⑪란은 ⑨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(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).
6.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.
7. ⑬란은 사용연료량, 배출계수,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.
8. ⑭란은 ⑨란과 ⑩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.
9. ⑮란은 ⑬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.
10. ⑯-1란과 ⑰-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11. ⑯-2란과 ⑰-2란은 배출구별 자가측정의 결과를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,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.
12. ⑯-3란과 ⑰-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측정농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.
13. ⑯-4란과 ⑰-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가스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일가스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 한 측정가스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, 일일가스유량은 시간당 측정가스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.
14. ⑯-5란과 ⑰-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 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.
 황산화물 일일배출량(⑯-5) = 측정농도(⑯-3) × 일일가스유량(⑯-4) × 10⁻⁶ × 64 ÷ 22.4
 먼지 일일배출량(⑰-5) = 측정농도(⑰-3) × 일일가스유량(⑰-4) × 10⁻⁶
15. ⑯-6란과 ⑰-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의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으로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(⑯-5)이 각각 30kg, 27kg, 33kg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 배출량은 (30+27+33) ÷ 3 = 30kg이 됩니다.
16. ⑯-7란과 ⑰-7란은 ⑰란 또는 ⑳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⑯-1란 또는 ⑰-1란의 배출구번호와 ⑰-1란 또는 ⑳-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.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⑯-6란의 일일평균 배출량과 ⑰-5란의 일일 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.
 -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이 30kg인데 ⑰-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 배출량이 40kg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(30+40) ÷ 2 = 35kg이 됩니다.
 - 만약, 1번 배출구의 ⑰-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 배출량이 각각 40kg과 50kg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(30+40+50) ÷ 3 = 40kg이 됩니다.
17. ⑯-8란과 ⑰-8란은 각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.
19. ⑯-9란과 ⑰-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.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가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: 황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(⑯-7) × 조업일수(⑯-8)
 나. ⑯-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: 황산화물 확정배출량(⑯-9) =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(⑯-6) × 조업일수(⑯-8)
 다. ⑰-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: 먼지 확정배출량(⑰-9) =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(⑰-7) × 조업일수(⑰-8)
 라. ⑰-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: 먼지 확정배출량(⑰-9) =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(⑰-6) × 조업일수(⑰-8)
20. ⑱란과 ㉑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.

○ 수질오염물질

1.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.
2.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3. ㉒의 "배출농도" 및 "일일폐수유량"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.
4. ㉒의 "일일배출량"은 "배출농도"에 "일일폐수유량"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5. ㉓의 "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"란에는 ㉒의 "평균"란의 수치를 적습니다.
6. ㉓의 "검사결과에 따른 산출"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.
7. ㉓의 "평균"은 "검사결과에 따른 산출"란의 각각의 수치와 "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"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8. ㉓의 "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"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"평균"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
9. ㉓의 "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"은 "평균"란의 "수질오염물질 배출량"에서 "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"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.
10. ㉔의 "유기물질"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㉓의 "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"이 큰 값을 적습니다.